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 . . (제 회)	

환 경 범 죄 등 의 단 속 및
가 중 처 벌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처분 효과 증대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61호, 2025.3.25. 공포, 2025.9.26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처분 확인 신청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고,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절차 진행 및 처분 이력 확인 근거 신설(안 제9조의2)

배출시설등을 인수하려는 경우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여부 및 이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행정처분 이력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나.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업무 위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처분(사용중지·폐쇄·철거)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업무를 위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행정처분의 확인 요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건물이나 그밖의 시설물(이하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려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의 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배출시설등 행정처분 확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종전의 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출시설등 행정처분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제1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통합
허가를 받은 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배출시설등 행정처분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개요	명칭		배출시설(영업) 종류	허가(신고)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상기간					
행정처분 사실 확인 동의서 (상속의 경우 공란으로 함)	성명(사업장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 사업장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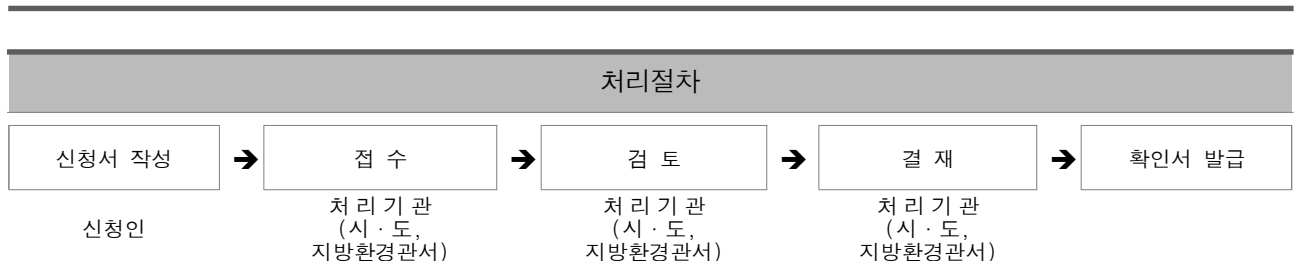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배출시설등 행정처분 확인서

사업장 개요	명칭	배출시설(영업) 종류	허가(신고) 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소	
○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받은 사실			
일련 번호	처분(적발) 날짜	처분내용(처분기간 포함)	위반사항
	처분 배출시설등	처분근거	위반근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행정처분의 확인 요청)</u> <u>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배출 시설, 건물이나 그밖의 시설물 (이하 “배출시설등”이라 한다) 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려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의 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배출시설등 행정처분 확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종전의 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출시설등 행정처분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u>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 -----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1. 삭제 2.·3. (생략) <u><신설></u> 4.·5.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2. (생략) <u><신설></u>	----- ----- ----- -----. -----. 2.·3. (현행과 같음) <u>3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u> 4.·5. (현행과 같음) ② ----- ----- ----- -----. 1.·2. (현행과 같음) <u>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u> <u>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u> <u>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자</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6161